

C-Tick/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마크)

1. 개요

<p>■ 정의</p>	<p>C-Tick/A-Tick (Radio Telecommunication Labeling/ Telecommunication Labeling : 호주전자파적합성마크)</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전자파 규격, 강제 규격 - 호주의 전자파장해 Mark로써 ACA(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호주통신청)에서 주관 - 호주인정협회(NATA)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세계 어느국가의 시험소의 성적서도 인정됨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 www.acma.gov.au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대상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C 관련기기 (AS 3548) :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 ISDN 관련기기 및 Cellular/무선 관련기기 :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 인증대상 제외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 일시거주자등의 개인용도 cellular mobile phone(CMP) : 통신법 subsection 282(10)에 규정된 법 집행당국에서 사용하거나, 국방성, 군에서 임시 야전통신시설, 보안당국에서 사용하는 기기 : 통신망용 시험장비 : 통신망을 갖춘 인터넷 또는 음성모뎀 연결에만 사용되는 Handset : 제품자체에 network 단말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TV 수상기, VCR 또는 FM stereo amplifier : 호주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예약방송서비스 또는 예약 유선방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Settop box

<p>■ 인증마크</p>	
<p>■ 적용국가</p>	<p>- 오스트레일리아</p>
<p>■ 적용규격</p>	<p>- AS (Australia Standards :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규격) - IEC CISPR - 통신법, 무선통신법, 호주통신기관법, 통신증지공보제2호, 무선통신규격</p>
<p>■ 기타</p>	<p>- ACA는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지 않는다. 해당기업이 관련 호주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선언하면 된다. 그러므로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적절한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ACA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지만, ACA로부터 공급업체 코드는 받아야 한다. - 국내에서 관련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내에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p>

2. C-Tick/A-Tick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1997년 1월 1일호주통신청(AUSTEL: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과 스펙트럼 관리국(SMA:Spectrum Management Agency)이 합병되어 신설되었다. ACA는 통신기기 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1,2,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내 네트워크 운영은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으며 시험은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다. 각 수준에 따라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호주인정협회(NATA)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세계 어느국가의 시험소의 성적서도 인정된다.

가. 관련법

- 통신법 1997
- 무선통신법 1992
- 호주통신기관법 1997
- 통신증지공보 제 2호 1997
- 무선통신규격 1998
- 무선통신(적합성증지-부수적방사)공보 1998
- 무선통신 (적합성증지)공보 및 관련통신규격
- 무선통신(전자파방사-인체노출)규격 1999
- 무선통신9적합성증지-무선이동통신전화)공보 1999

나. 법률적 배경

통신법 제 376조에 따르면 공공 네트워크나 공공시설에 연관되는 소비자 통신기기 및 소비자 통신케이블에 대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는 권한은 ACA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ACA의 권한은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의회가 판단을 내린 경우만으로 국한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통신네트워크나 통신설비의 보전 및 공공 네트워크나 공공시설에 접촉한 사용자들의 건강과 안전보장
- 긴급 서비스 번호에 즉각 접속할 수 있을 것을 보장
- 표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나 통신시설의 호환성 보장
- 법률이 명시하는 목표성취 (법률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시험단계에 있어서 고려된 점은 어디까지 공급자 시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성, 네트워크 보전, 표준 전화 서비스, 긴급 접속 등의 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평가를 함에 있어 산업부분에 속하는 업체 대부분은 3단계로 구분되는 Compliance 단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NATA나 NATA와 MOU를 체결한 기관 중 한 곳의 공인 시험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게 된 것이다.

다. 집행규격과 처벌규정

소비자 통신기기와 소비자 통신케이블의 Labelling과 관련, 통신법은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저지를 수 있는 위반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 레이블을 부착해야하는 통신기기나 케이블을 레이블 부착 없이 공급하는 경우
- Labelling Instrument에 명시된 '레이블 부착 전 갖추어야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레이블을 부착하는 경우
- Labelling Instrument에 명시된 '레이블 부착 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376항에 규정된 표준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label을 부착하는 경우

통신기기나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해야 하는 네트워크나 통신 시설에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거나 376항이 규정하는 Non-Compliance 레이블임을 밝히지 않은 채 네트워크나 통신 시설에 접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 네트워크나 통신시설운영자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 접속허가를 받은 경우
- 접속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라. 기술규제의 적용범위

공중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단말기와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통신기기들은 기술 규제를 받는다. 이 규제에는 통신법(1997)에 의한 망 보전성, 상호 동작성, 비상 접근성, 전기적 안전성과 통신법에 의한 고주파 스펙트럼 EMI와 고주파 인체노출이 포함된다. 저전압 안전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마. 통신관련 기술규격

모든 소비자용 통신기기는 호주의 기술규격(Technical Standards) TS 00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TS 001은 AS 3260 요구사항도 규정하고 있고, IEC 60950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신규격은 현재 ACA TS 001(Safety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1997)부터 ACA TS 38 (ISDN Primary Rate Access Interface, 1997)까지 발행되어 있다.

무선통신 규격은 AS 4295 (Analogue Speech(analogue modulate equipment 29.7 MHz to 1GHz) 등 8개 규격이 발행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호주 뉴질랜드 통합규격도 포함되어 있다.

바. 인증기관

호주의 법적 승인기관은 ACA이며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기업이 관련 호주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선언하면 된다. 그러므로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적절한 마크를 부착하기위해 ACA의 승인을 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ACA로부터 공급업체 코드는 부여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관련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내에 대리인이 있어야한다.

사. 대상기기

(1) EMC

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MC표준은 CISPER 22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법적인 적합성마크(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interface 가 지원된다

- 광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S232 ,EIA RS442/449, ITU-T V.35, ITU-T X.21/X.21 bis)
. 임대선(leased line)(V.35, X.21, V.24)
- X.25 패킷교환망(packet switched networks)(V.35,X.21,V.24)
-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합성이 증명품목
(leased line, switched lines, ISDN, E-1, DSU/CSU, multiplexers)
- 지역네트워크 서비스 (E-1 2.048 Mbts/sec, E-3)

(3) ISDN 관련기기

layer 1 ISDN Basic Rate는 ITU-T Recommendation I.430에 근거한 것이고 layer 1 ISDN primary rate는 ITU-T Recommendation I.411에 근거한 것이다.

G.703 인터페이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Basic Rate ISDN과 Primary Rate ISDN서비스는 Onramp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Primary Rate ISDN은 Macrolink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폐지 될 것이다. ISDN 기기에 대한 physical connector는 ISO 8077

이다. layer 1, 2 및 3 에 대한 시험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4) Cellular/무선 관련기기

- Cellular/무선표준

Cellular 및 무선제품들은 ITU-T Recommendation 근거를 두고 있는 호주 국가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 Cellular/무선 주파수 범위

. Cellular 주파수 범위

: 디지털 GSM: Rx 925-960 MHz TX 880-915 MHz

: 아날로그 AMPS: RX 869-894 MHz TX 824-849 MHz

. DECT 주파수 범위: 1880-1990 MHz

(5)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 아날로그 네트워크 (fxe, e&m, diod, 2 WIRE, 4 WIRE, GROUND LOOP)

- 다음 제품 및 접속은 호주에서 승인 이 요구된다.

. PSTN에 대한 아날로그 접속

. FAX 기기

아날로그 제품은 ITU-T RECOMMENDATION 및 호주국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 교환망(PUBLIC SWITCHED NETWORK) 또는 사설회로에 연결되는 모든 아날로그 제품은 반드시 itu-t Recommendation에 적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호주의 성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6) 인증대상이 아닌 예외기기

- 다음과 같은 cellular mobile phone(CMP)

.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된 CMP

: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호주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호주에 영구 거주 하기 위해 처음 입국한 사람, 또는 해외여행 후 호주에 귀국하는 호주인, 그리고 수입자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CMP

- 다음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기

. 통신법 subsection 282(10)에 규정된 법 집행당국에서의 사용

. 국방성이나 군에서 임시 야전통신시설에서 사용

. 호주보안당국에서 사용

- 통신망용 시험장비
- 통신망을 갖춘 인터넷 또는 음성모뎀 연결에만 사용되는 Handset
- 제품자체에 network 단말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TV 수상기, VCR 또는 FM stereo amplifier
- 호주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예약방송서비스 또는 예약 유선방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set top box

아. 인증절차

(1) 신청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및 사후관리 유지용 문서로 적합성 문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
- 적합성증명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기타 해당정보

이러한 내용은 ACA에 코드부여 신청을 제출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ACA는 적합성 문서를 심사한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적합성문서 작성, 유지 및 심사가 포함된다.

장비의 각 부분품은 각각 고유의 모델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장비의 유사함과 관계없이 각각의 신청서류제출이 요구된다.

(2) 인증 기본절차

적합성 평가절차는 자체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Telecommunication Labelling Notice에 기술된다. Labelling Notice와 설명서는 ACA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호주내의 승인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

- Label 신청 및 공급업체 코드번호 등록 의향서 ACA에 제출
- ACA 기술표준에 따른 시험실시
-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적합성문서 작성 및 유지
- ACA에 사용 의향을 통보한 뒤 기기에 A-Tick 라벨 부착

통신 및 EMC 절차에 따른 Compliance Folder와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각각 한 부분만 있으면 된다.

공급업체가 EMC 에 대하여 충족하여야 할 4가지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적합성(product compliance)에 대한 기술적 근거 제공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및 유지
- 주어진 지시에 따른 제품에 label 부착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작성 및 유지
 - .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 . 서명이 날인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 제품 사진 또는 block diagram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 . 적합성 사양 목록
 - . 제품의 기술적인 설명자료

기기의 종류에 따라 EMC 적합성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시험 성적서
- Technical Construction File

Technical Construction File은 시험 실행이 타당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TCF가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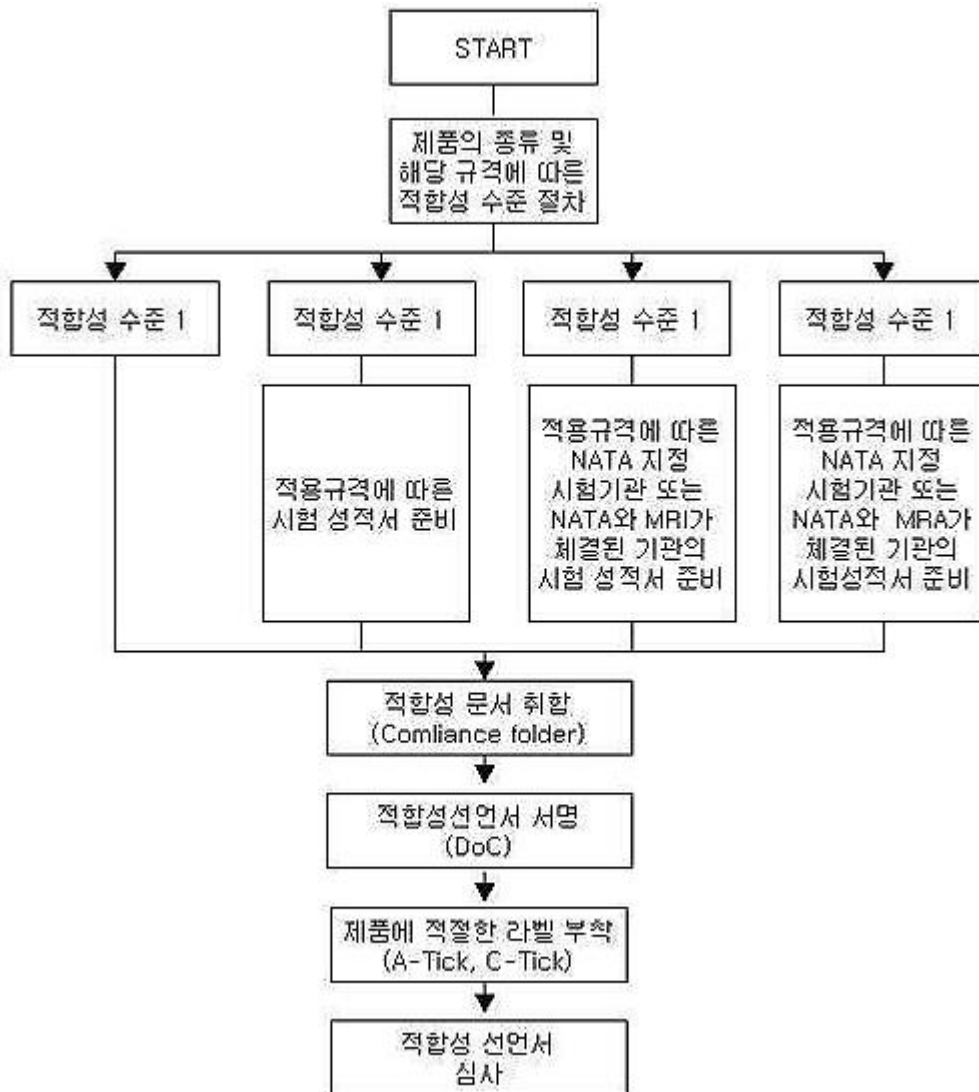
- 물리적 특징 또는 장소 때문에 기기 시험이 어려울 경우
- 여러 형태로 변형된 기기가 판매되는 경우
- 기술규격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기기의 경우

Label과 공급업체 코드 등록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Label 및 공급업체 코드 번호 신청 의향서를 접수해야 하고, ACA는 공급업체 코드 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인이 EMC/문선 Label(C-Tick)에 대한 공급업체 코드 번호를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번호를 통신 (A-Tick 또는 A-cross0)에 부여한다.

(3) 인증 상세절차

공급업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적합성수준에 해당 제품이 어떤 수준에 적용되는 해당 규격에 따라 결정된다.

제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그리고 적합성 증명의 복잡성을 반영한 것이 적합성수준 분류제도의 취지이다.



(가) 적합성 수준 1 (Compliance level 1)

A-cross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소비자 기기를 연결시키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합법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연결시키려면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CA에서 발행한 연결 허가 확보
- carrier 또는 carrier service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자가 발행한 서면 동의서 확보

- ACA가 제정하는 연결규정에 적합

연결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A-Tick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연결허가는 비표준 소비자 기기에 한해서만 발행된다.

Level 1 제품의 적합성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인은 ACA에 공급자 번호 신청
- ②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작성
 - 모델번호
 - 제품사진
 - software version
 - 제품설명서
- ③ 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 ④ label 신청 의향 및 공급업체 코드번호 신청의향 통보서 제출
- ⑤ 부적합라벨과 더불어 다음 문구를 최소 5mm의 크기의 대문자로 작성하여 겹포장에

에

부착해야 한다.

“ CAUTION : DO NOT USE BEFORE READING THE INSTRUCTION”

(나) 적합성 수준 2(compliance level 2)

Level 2에 해당되는 제품의 목록은 진술된 표 기술규격 및 적합성 레벨에 따르며, Level 2 제품의 적합성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인은 ACA에 공급자 번호신청(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②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작성
 - 모델번호
 - 제품사진
 - software version
 - 제품설명
- ③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 ④ 다음 자료중 한가지 제공
 - 시험성적서
 - 인가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증명서

- Competent Body가 발행한 적합성 증명 문서

(다) 적합성 수준 3(compliance level 3)

Level 3에 해당되는 제품의 목록은 적합성레벨에 따르며, Level 3 제품의 적합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인은 ACA에 공급자 번호신청
- ② 아래내용을 포함한 설명서 작성
 - 모델번호
 - 제품사진
 - software version
 - 제품설명
- ③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 ④ 다음 자료중 한가지 제공
 - NATA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증명 문서
 - Competent Body가 발행한 적합성 증명 문서

Level 2, Level 3에 있어서의 competent body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정된다.

- : 장소나 통신 기기의 크기 등의 문제로 기기를 시험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 비용상 문제는 제외된다.
- : 376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할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 : 376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할 시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받은 승인에 대한 부가적인 적합성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Labelling instrument에 기술되어 있다.

- : 해외의 승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간 협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
EU상호 인증제도가 그 하나이다.
- : 해외승인 요건과 376항 표준요건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Compliance 단계에 명시된 Compliance 요구사항을 따른다.

(라) 적합성 수준 4(compliance level 4)

Level 4 제품은 주로 무선통신 관련제품으로 적합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 ②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작성
 - 모델번호
 - 제품사진
 - software version
 - 제품설명
- ③ 관련 강제규격에 따른 영문 시험성적서
(시험기관은 호주 국내 NATA 지정시험소, NATA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호주국의 시험소.)
- ④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인증서
(ISO 9003 이상의 규격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기관은 JAS-ANZ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ISBN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마) Label 부착 이후 기기에 대한 기술적 변경

특정 모델의 통신기거나 케이블이 해당 적합단계를 충족,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적합 레이블을 부착한 후 해당 모델의 기술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변경 내용을 일일이 적합 단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 제품의 적합 폴더에 삽입하는 것으로 족하다.

- 디자인 변화 설명
- 구 제품과 신 제품 사이의 차이점 설명
- 신 제품이 376항이 명시하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기술적 설명

276항이 포괄하는 범위 밖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적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76항 표준에 어긋나는 제품의 변화가 있을 경우 Non-Compliance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Non-Compliance를 붙이지 않은 제품은 공급될 수 없다.

(4) Label 관련 요구사항

신법 376조에 의한 기술적 표준의 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방법이 바로 소비자 통신기기와 소비자 통신 케이블의 labelling 요건이다. 특정한 기술적 표준이 label instrument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표준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통신법 407조에 따르면 생산 업체나 수입업체들이 소비자 통신기기와 소비자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Labelling Instrument를 만드는 권한은 ACA에 있다.

레이블에는 통신기거나 통신케이블이 해당 376조에 적합한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Labelling Instrument와 관련해서 ACA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할 수 있다.

- 레이블 형식 규정(408조 2항)
- 레이블 부착방법(408조 2항)
- 레이블 부착 전 구비요건(408조 5항)
- 레이블 부착 후 구비 요건(408조 6항)

해당 386조에 적합하고 유효한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는 소비자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 네트워크나 공공시설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는 Labelling Instrument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개인 네트워크는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 네트워크는 공공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접속하는데 있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즉, 호주 시장에서는 유통이 되지만 공공네트워크에 대한 접속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기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기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Non-Compliance레이블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Non-Compliance 레이블 부착한 기기는 개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공네트워크에의 접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Labelling 체계는 산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개발된 것이다.

Labelling Instrumen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합성평가비용을 절감하려는 기본 틀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안전, 네트워크보전, 표준전화 서비스, 긴급 접속 등의 적절한 보안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까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들이 상당수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집행자들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관련법은 Labelling 체계의 홍보와 시장 인지도를 높여 줄 심벌과 함께 Labelling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Compliance 규정의 집행 및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Labelling 체계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제품에 필요한 것은 시험뿐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모든 허가 절차는 폐지되었고 인증기관이나 허가기관을 거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전망이다.

레이블을 부착하는 의무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과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을 받아 타인이 통신기거나 케이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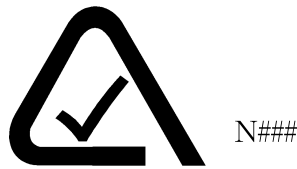
레이블을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레이블 부착요건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있다. 수입이전 단계나 생산업체의 대리인이 레이블 부착을 위임받는 계약이 실제로 상당 양 행해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처음으로 레이블을 부착하기 이전에 생산 업체나 수입 업체는 레이블을 부착한다는 사실을 ACA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고지는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며, 새로운 종류, 새로운 제품의 모델마다 그러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레이블 부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레이블을 부착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가) 적합성 레이블(Conformity Label) 형식

- A-Tick 해당 통신요건에 적합함을 의미

(Telecommunications Labelling Notice 1997 제 7조 (4)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시)



- EMC/무선통신기기 레이블 (C-Tick EMC/무선통신 요건에 적합함을 나타냄)



* 공급업체 코드번호는 C-Tick, A-Tick 등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적합성 레이블의 형식은 Label Instrument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해당심별 사용
- 생산 업체나 수입업체 확인을 위한 자세한 정보

공급 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요구 사항이 있다.

- 호주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 호주에 등록된 상표
- 호주 회사 번호
- 공급업체 코드 번호

(나) 레이블의 특징

- 색상 제한 없음
- 3mm 또는 12 point 이상
- 허가된 경우, 포장에 부착 가능

규격적합 표시(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조건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에 기술되어 있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EMC적합성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레이블 부착이후의 요구사항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레이블을 부착하는 통신기나 케이블의 종류와 관련, Compliance 폴더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Compliance 폴더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문서는 컴퓨터 파일 형태, 혹은 마이크로 필름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Compliance폴더는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공급을 중단한 시험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Compliance 폴더 내에 보관되어야 하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문서작성자가 누구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복사본을 보관해도 상관없다.

Compliance폴더 내에는 해당 Compliance 단계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Non-Compliance 통신 기기와 케이블의 경우, Compliance 폴더 내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있어야 하며, 기기와 관련된 모든 시험보고서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모든 non-compliant 기기에 대해서 시험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ompliance 폴더 내에 들어있는 설명서는 항상 보완되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레이블이 부착된 제품이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한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인증기관이나 허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시험보고서가 그 제품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EMC에 관한 호주의 규격.기관

분야	적용규격	국제규격
EMC공통	AS 4251, 1	EN 50081-1
전동모터, (가정용)전동공구	AS 1044-1995	CISPR 14, EN 44014, CFR 47 Part 15
조명	AS 4051-1994	CISPR 15, EN 55015
정보기술기구	AS 3548-1995	CISPR 22, EN 55022 CFR 47 Part 15
방송용수신기	AS 1053-1992 /AS 4053-1992	CISPR 13 EN 55013 CFR 47 Part 15
ISM	AS 2064-1992	CISPR 11 EN 55020
자동차, 모터보트	AS 2557-1992	CISPR 11 EN 55011 CFR 47 Part 18
통신기기	AS 3548 (AUSTEL하에서 강제 적용)	CISPR 22
기타의 기기	AS 1052-1992	CISPR 16 FCC-MP 4
	AS 1052, 1-1995	CISPR 16.1
	AS 2344-1980	CISPR 18 ANSI 430
	AS 4052-1992	CISPR 19
	AS 2279-1991	IEC 555 EN 60555
기타	AS 2839-1988	IEC 107
	AS 1852. 00-1980(용어) AS 1852. 902-1976(용어)	
	AS 2279.4(1991), AS 2772.1 (1990), AS 2772.2(1988), AS 2834(1995), AS 2900.6(1986), AS 3112(1993)	

4. C-Tick 인증을 취득한 품목

Digital Set-Top Box	디지털셋탑박스
HDTV 수신카드	디지털지상파수신기
LCD 모니터	